

# 1. 생활관 규정

개정일 : 2017년 1월 1일  
2024년 8월 23일

##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생활관은 베뢰아국제대학원대학교 생활관이라 칭한다.

제2조(소재) 본 생활관은 베뢰아국제대학원대학교에 둔다.

제3조(목적) 본 생활관은 베뢰아국제대학원대학교 학생들에게 기숙의 편의를 제공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08.23.)

## 제2장 조 직

제4조 본 생활관은 운영위원회를 두어 생활관 운영에 대한 기본 방침과 제 규정을 결정한다.

제5조 생활관장은 총장이 임명하고 중임할 수 있다.

제6조 운영위원회의 구성은 본 대학 총장과 각 부 처장(교무, 학생, 사무), 생활관장으로 구성되고 위원장은 총장이 된다.

제7조 생활관장은 운영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생활관내 생활 전체를 감독하며 지도한다.

제8조 생활관에는 임원회를 두어 생활관 운영에 협력케 한다. 단, 임원 선출에 대한 규칙은 따로 정하고 생활관장이 임명한다.

## 제3장 입관 및 퇴관

### 제9조 (입실 및 퇴실)

- ① 입사를 원하는 자는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입사원서 및 건강진단서를 제출하여 생활관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 ② 생활관 입사를 원하는 자는 개별 신청하여야 하며 선발 기준에 의거하여 선발한다. (개정 2017. 1. / 2024.08.23.)
- ③ 입사자 선발규칙은 운영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 ④ 입사가 허락된 자라도 소정의 생활관비와 자율적 경비를 부담해야 입관할 수 있다.

### 제10조 (생활관비 및 자치회비) <개정 2017. 1>

- ① 생활관비 및 관리비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개정 2024.08.23.)
- ② 생활관비(보증금 포함) 및 관리비는 입실과 동시에 납부해야 한다.(퇴실시 호실 점검을 거친 후 보증금은 반환된다.)(개정 2024.08.23.)
- ③ 생활관비는 분기(3개월)을 기준하여 매 분기 초에 납부하고, 중간에 입사할 경우의 납부금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17. 1. / 개정 2024.08.23.)
- ④ 퇴사 시 기납부금은 반환이 가능하며, 반환 기준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17. 1. / 개정 2024.08.23.)
- ⑤ <삭 제> (신설 2017. 1. / 개정 2024.08.23.)

### 제11조 삭제

### 제12조(퇴실)

- ① 입실생은 납부한 분기 도중에 퇴실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퇴실하고자 하는 날의 15일 이전에 퇴실신청을 하여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신설 2024.08.23.)
- ② 퇴실 허가를 받은 사생은 지정된 퇴실 일에 가구 원상복구 및 청결상태 확인 등 퇴실 절차 진행 후 퇴실하여야 한다. (신설 2024.08.23.)
- ③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관장은 퇴실처분을 할 수 있다. (신설 2024.08.23.)
  1. 공동생활의 전염에 우려가 있는 전염병 환자
  2. 사생수칙을 위반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
  3. 생활관 내에서 폭행, 절도 등 범법행위를 일으킨 자
  4. 이성간 서로의 방에 출입한 자
  5. 입주 지연, 생활관비를 30일 이상 미납한 자
  6. 벌점 20점 초과자
  7.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자

### 제13조 <삭 제>(개정 2017.1. / 2024.08.23.)

## 제4장 규율 및 의무

**제14조** 생활관장의 허락이 없이는 임의로 호실을 옮기지 못한다.

**제15조** 생활관에 입사하는 사생은 별도로 정하는 사생수칙을 엄수해야 한다. (개정 2017.1./ 2024.08.23.)

① ~ ③ <삭 제>

**제16조** 본 생활관 규정 및 의무를 위반하는 자는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퇴실조치 될 수 있다. (개정 2024.08.23.)

**제17조** 본 생활관의 학생은 생활관의 건물, 기물, 기타 재산에 대한 선용 및 보호의 의무가 있다. 재산에 대한 파손 및 오손은 파손자가 배상해야 한다.

**제18조** 생활관의 입실자격은 본 대학교에 재학중인 재학생을 원칙으로 한다. 단, 생활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재학생 외 입실을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27.1./ 개정 2024.08.23.)

**제19조(사생활 보호)** 생활관장은 생활관 질서 유지 및 관리를 위해 개인 호실을 점검할 수 있다. (신설 2027.1. / 개정 2024.08.23.)

## 제5장 재산유지

**제20조(이용제한)** 생활관의 생활 및 시설물의 이용은 입실자에 한한다. (신설 2017. 1 / 개정 2024.08.23.)

① 학교의 특별 행사 및 사정이 있을 경우 입실자의 숙소 사용을 제한, 조정할 수 있다.(신설 2024.08.23.)

부 칙

- 1) 이 규정은 공포 즉시 시행한다.
- 2) 이 규정은 2007년 9월 1일부로 시행한다.
- 3) 이 개정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4) 이 개정 규정은 2024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5) 이 규정 외의 규정은 성경과 만국 통상 레를 따른다.